

광주지방법원 2024. 3. 19 선고 2023가단13522 판결 [토지 및 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5.

판 결 선 고 2024. 3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2. 12. 1.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,
나. 4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채승원

별지